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병운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8
명)

1.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를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u>후</u>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0조(의견청취) ① ----- ----- ----- ----- <u>후 요</u> <u>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 ·</u> <u>제출하여</u> -----.</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요금조정계획안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